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나2338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나2338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가단504187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피고, 항소인 C

변론 종결 2015. 1. 14.

판결 선고 2015. 1. 2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가단504187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10. 18. 접수 제13525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0.경 B의 연대보증을 받아 제1심 공동피고 A와 신용보증한도액 9,000만 원, 보증기간 2012. 4. 20.부터 2013. 4. 19.까지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B는 E, F과 함께 대구 달서구 G 대 225m²(이하 'G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는데, 2012. 9. 12. E에게 자신의 지분(1/3)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다가 10. 1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2012. 9.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F에게 각 1/6지분씩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는 2012. 10. 10.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자신의 지분(1/2)을 피고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10. 18. 접수 제135250호로 그 지분 전부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A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가항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3억 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2. 10. 22.경 당좌부도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 9. 중소기업은행에 A가 연체한 대출 원리금 91,589,940원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676,510원을 지출하였다.

바.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B의 연대보증을 받아 A와 2004. 4. 27. 1억 6,000만원, 2011. 3. 16. 4,5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2. 10. 22., 10. 18. 각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후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6164호로 A와 B를 상대로 190,398,782원 및 그 중 144,742,848원과 45,258,2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본 바로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이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A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2. 10. 18.경부터 보증사고를 일으키고 원고가 2013. 1. 9. 대위변제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연대보증인 B에 대한 구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증거에 제1심 법원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자료제출명령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B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상가(1/2 지분)와 G 대지(1/3 지분)가 있었으나, G 대지의 경우 그 이전에 이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실제로도 이 사건 매매와 같은 날짜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결국 이 사건 상가가 유일한 재산이었고, B가 가진 지분의 시가액은 9,750만 원이었다(갑 제7호증).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 92,266,450원(=위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 91,589,940원+비용 676,510원) 외에 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90,398,782원이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 H와 B의 남편 A는 고등학교 동기로서 서로 알고 지냈는데, H와 A가 이 사건 상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고와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상가를 대구성서신용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지분대로 절반씩 대출금을 사용하였는데, 2010. 1. 20.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1억 1,000만 원에서 근저당권설정비 등을 공제한 109,270,600원을 실제로 받아 그 중 70,362,464원을 대구성서신용협동조합 대출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지분대로 나눠 19,454,068원 $[(\text{위 대출금 } 109,270,600\text{원} - \text{변제액 } 70,362,464\text{원}) \times \text{지분 } 1/2]$ 을 B가 사용하였다. 그런데 B가 2012년 4월경부터 위 대출금 중 자신이 사용한 몫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고가 그 몫까지 대출금의 이자 전부를 내다가 2012년 10월경 B에게 이자를 못 내면 차라리 지분을 넘기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매매에 이르렀다.

이때 이 사건 상가의 가치를 당시 시세인 1억 9,000만 원으로 정하고, 위 대출금 1억 1,000만 원과 임차인 I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만 원 $(=1\text{억 } 9,000\text{만 원} - 1\text{억 } 1,000\text{만 원} - 3,000\text{만 원})$ 에서 B가 가진 지분의 가치에 해당하는 2,500만 원 $(=5,000\text{만 원} \times 1/2)$ 을 2012. 10. 18. 지급하였다.

피고는 당시 B 측의 경제적인 사정을 몰랐고,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모른 상태 즉, 선의로 취득하였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사해행위 당시에 공동담보의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인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수익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추정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는 수익자 스스로 선의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가 선의 즉, 위와 같은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명한

판사정성균

판사이수민

별지